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3549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운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2020. 7. 23.

판결 선고2020. 9. 1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32,247원 및 그 중 79,572,127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4.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8. 10. 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3. 접수 제193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1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차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수차례 연장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9. 9.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2014. 9. 22. D은행으로부터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 과목으로 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5. 9.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후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다가 2019. 9. 20.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였고, 그 무렵 D은행은 원고에게 원금연체를 사유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 22. D은행에게 79,572,127원(= 원금 78,940,251원 + 이자 631,876원)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기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금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소요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변제된 금액은 1,614,670원이었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보증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미수추가보증료는 645,45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위변제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사. 피고 B은 2018. 10. 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32,247원(= 대위변제금 79,572,127원 + 추가보증료 645,450원 + 법적절차비용 1,614,6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9,572,1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4.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D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최초 변제기한인 2015. 9. 17.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수차례 대출기한만을 연장하는 동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위 대출금의 원금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채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의 합계액은 263,320,000원(= 이 사건 부동산 187,000,000원 + F 토지 23,940,000원 + G 토지 지분 52,380,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합계액은 약 208,609,434원(=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81,832,247원 + H은행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 + I캐피탈에 대한 채무 약 2,483,000원 + D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7,769,000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가압류채무 6,525,187원)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적극재산은 76,320,000원(= 263,320,000원 - 187,000,000원)으로 감소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선의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강민

별지